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및 계란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

6월 22일 개최된 제 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및 계란 할당관세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연장

#### 1. 개정 사유

- 하반기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10% 인하한 조치의 적용 기간을 6개월 간 연장하려는 것

#### 2. 개정 내용

-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21.6.30.에서 '21.12.31. 까지로 6개월간 연장

현행	개정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 ----- <b>2021년 12월 31일</b> -----. ② ----- ----- <b>2021년 12월 31일</b> -----. -----

### II. 계란 할당관세 적용 연장

#### 1. 개정사유

-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조속한 가격 안정 및 수급 정상화 도모

## 2. 개정 내용

-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무관세 수입(기본 8~30% → 할당 0%)이 당초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연장

현행	개정
2021년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	<a href="#">2021년 12월 31일까지</a>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

##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보도자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1.12.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붙임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3] (보도자료) 계란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 | Contact



양다윤 관세전문가  
T 02-6011-3056  
E dyyang@esein.co.kr



남근혜 컨설턴트  
T 02-6011-3076  
E khnam@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